##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03

발의연월일: 2022. 7. 22.

발 의 자:정태호·한병도·송갑석

어기구 • 조승래 • 임종성

이성만 • 윤준병 • 설 훈

임호선 · 고민정 · 조정훈

변재일 · 김경만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 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감면하는 특례를 두어 친환경자동차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으며, 해당 조세특례는 2022년 12 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에 대하여 적용됨.

그런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하는 만큼, 친환경자동 차의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 음. 또한, 최근 차량용반도체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신차 출고가 1 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 하여 친환경자동자 구매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4년 12월 31 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친환경자동차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 려는 것임(안 제109조).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3항, 제6항 및 제9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
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②	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	③
터 <u>2022년 12월 31일</u> 까지 제조	<u>2024년 12월 31일</u>
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	
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	6
터 <u>2022년 12월 31일</u> 까지 제조	<u>2024년 12월 31일</u>
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	
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	9
터 <u>2022년 12월 31일</u> 까지 제조	<u>2024년 12월 31일</u>
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	
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